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45
----------	-------

발의연월일 : 2025. 8. 1.

발 의 자 : 이수진 · 장철민 · 이건태
임미애 · 추미애 · 김 윤
박 정 · 김남근 · 김병주
소병훈 · 김동아 · 이재정
허 영 · 김문수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행법 개정(법률 제20903호, 2026.1.1. 시행)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연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하도록 규정함.

한편, 현행법 제92조에 따르면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 소득대체율은 ‘납부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 이 경우, 12월에 추납 신청 후 1월 납부 시 성실납부자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후 납부 근거 규정인 제92조의 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 기준을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변경함(안 제9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3항 본문 중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를 “제7항에 따른 납부기한일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제3항의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는 제7항에 따른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제88조에 따라 계산하되, 그 연금보험료 계산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대한 특례) 제9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2032년까지의 기간 동안 12월에 추후 납부를 신청하고 같은 월에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추납보험료를 같은 월의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 2025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90
2. 2026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95
3. 2027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00
4. 2028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05
5. 2029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10
6. 2030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15
7. 2031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20
8. 2032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25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② (생략) ③ 추납보험료는 <u>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u> 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설></u>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제7항에 따른 납부기한일이</u> ----- -----. ----- ----- ----- ----- ----- ④ <u>제3항의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는 제7항에 따른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제88조에 따라 계산하되, 그 연금보험료 계산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u>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⑦ ----- <u>제6항</u> ----- ----- ----- -----
④·⑤ (생략) ⑥ 제1항부터 <u>제5항</u> 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추납보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
-------------------------	--------------